

「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3월 19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9년 3월 25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45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9년 3월 25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환경위생과장)

가. 제안이유

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2항 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, 미탄면 주민투표관련 행정·재정상 필요한 조치로 주민지원(가구별 지원)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주민지원기금 가구별 지원범위 확대 규정 신설(안제6조의2제3항)
 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별표 3의 사업 중 가구별 지원이 가능한 모든 사업과 농업용 자재
- 주민감시 요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규정 신설(안 제16조제3항)
 -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적용
- 기타 용어의 통일, 띄어쓰기 등 문구 개정
 -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등의 조문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미탄면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원활한 행정·재정상 필요한 조치와, 최저임금법에 의한 주민감시 요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
- 안 제6조의2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기존의 건강검진,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포함하여 소득중대, 복리증진, 육영사업 중 가구별 지원이 가능한 모든 사업과 농업용 자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.

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 중 “아니한”을 “않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국·공립연구기관”을 “국립·공립연구기관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수립하고 제2항 각호”를 “세우고 제2항 각 호”로 한다.

제6조의2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영 제27조 별표3의 사업 중 가구별 지원이 가능한 모든 사업과 농업용
자재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”를 “각 호의 서류를 붙여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얻어야”를 “받아야”로 한다.

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”를 “각 호의 대장을 갖춰 두고”로 한다.

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”를 “각 호에 해

당하는 자 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잔여기간”을 “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위원중”을 “위원 중”으로, “대하여”를 “대해서”로 한다.

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적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. 운영)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(이하 “지원협의체”라 한다)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주변영향지역(주변영향지역이 결정·고시되지 <u>아니한</u>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,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)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12명</p> <p>3.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(전문대학이상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<u>국·공립연구기관</u>의 선임연구원 이상) 2명</p> <p>4. 삭제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5조(주민지원기금 조성) ① (생략)</p>	<p>제4조(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. 운영) ①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u>않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3. ----- ----- ----- <u>국립·공립연구기관</u>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주민지원기금 조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③군수는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 각호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지급한다.

제6조의2(주변영향지역 지원 등)

① (생략)

② 군수가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·2. (생략)

<신설>

3. (생략)

제7조(사업계획서의 제출) 지원협의체에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----- 각 호-----
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③----- 세우고
제2항 각 호-----

-----.

제6조의2(주변영향지역 지원 등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영 제27조 별표3의 사업 중 가구별 지원이 가능한 모든 사업과 농업용 자재

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제7조(사업계획서의 제출) -----

----- 각 호의 서류를 붙여

-.

1. ~ 3. (생략)

제8조(사업계획서의 변경등)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9조(기금의 운용. 관리) ①·② (생략)

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10조(기금운용심의회) ① ~ ③ (생략)

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·2. (생략)

⑤당연임명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1조(심의회 기능) ①심의회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사업계획서의 변경등) ----

----- 받아야 ----.

제9조(기금의 운용. 관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-----

----- 각 호의 대장을 갖춰 두고 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기금운용심의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-----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----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⑤-----

----- 남은 기간 ----
-----.

제11조(심의회 기능) ①-----

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
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12조(간사 및 수당등) ① (생략)

②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「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의하여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6조(지역주민의 감시) ①·② (생략)

<신설>

각 호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간사 및 수당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 위원 중 -----
----- 대해서-----

-----.

제16조(지역주민의 감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최저입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적용한다.